

2005. 9. 8(목) 10:00
제1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거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5. 8. 3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5. 8. 31
- 다. 의안번호 : 제2005 - 44호
- 라. 상정일자 : 2005. 9. 7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는 일시에 2개년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한꺼번에 토지분 재산세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신설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우리 군의 2005년도 재산세 부과예정액은 2,60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15백만원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2005.1.5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크게 낮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65백만원 정도 추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조례 개정시 부과주민 1인당 2,440원 정도로 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수혜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됨.

○ 전년대비 재산세제 개편 상황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율은 33.0% 감소된 반면, 과표적용 비율 상향(46%→50%)에 의한 8.0%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 및 2개년 적용으로 34.6% 각각 상승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9.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같은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재산세가 감소된 것은 전국합산과세에서 자치단체별로 합산과세에 따른 고액납세자의 세액감소와 주택분 과표산출방식 개편(주택개별공시)으로 세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임.

<고액납세자 재산세 감소현황>

- 한국전력공사 54,675천원 → 9,164천원(45,529천원 감소)
- 농협중앙회 34,606천원 → 7,323천원(27,283천원 감소)
- 국민은행 14,888천원 → 2,795천원(12,093천원 감소)
- 케이티 12,819천원 → 2,327천원(10,492천원 감소)

※재산세의 전년대비 감소분은 연말 종합부동산세(국세)로 과세한 후 2006년 지방교부세로 자치단체별로 배분될 예정임.

○ 우리 군의 경우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전반적으로 세액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감면안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및 도의 권고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이나,

전국합산과세가 시·군별 합산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과다보유자 위주로 세액이 크게 감소된 것이며, 어려운 경제여건임을 감안 주민들의 감면혜택 부여에 대한 인근 자치단체와의 비교측면, 감소

분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2006년 토지분 지방교부세로 배분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2005도 공시지가 상승률(25.6%)에 대하여 50% 감면률 적용 시 전년대비 재산세가 오히려 3.2% 감소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과다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 감면률 적용시 재산세 변동상황<현년도 공시지가 상승분 25.6%>

- 50% 적용 시 : 공시지가 12.8% 감소<전년대비 3.2%감소>
- 40% 적용 시 : “ 10.2% 감소<전년대비 0.6%감소>
- 30% 적용 시 : “ 7.7% 감소<전년대비 1.9%증가>
- 20% 적용 시 : “ 5.1% 감소<전년대비 4.5%증가>
- 미 감면시 : <전년대비 9.6%증가>

○ 과세감면을 위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감면조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것이며,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같음처리토록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통보가 있었으므로 절차 및 형식에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